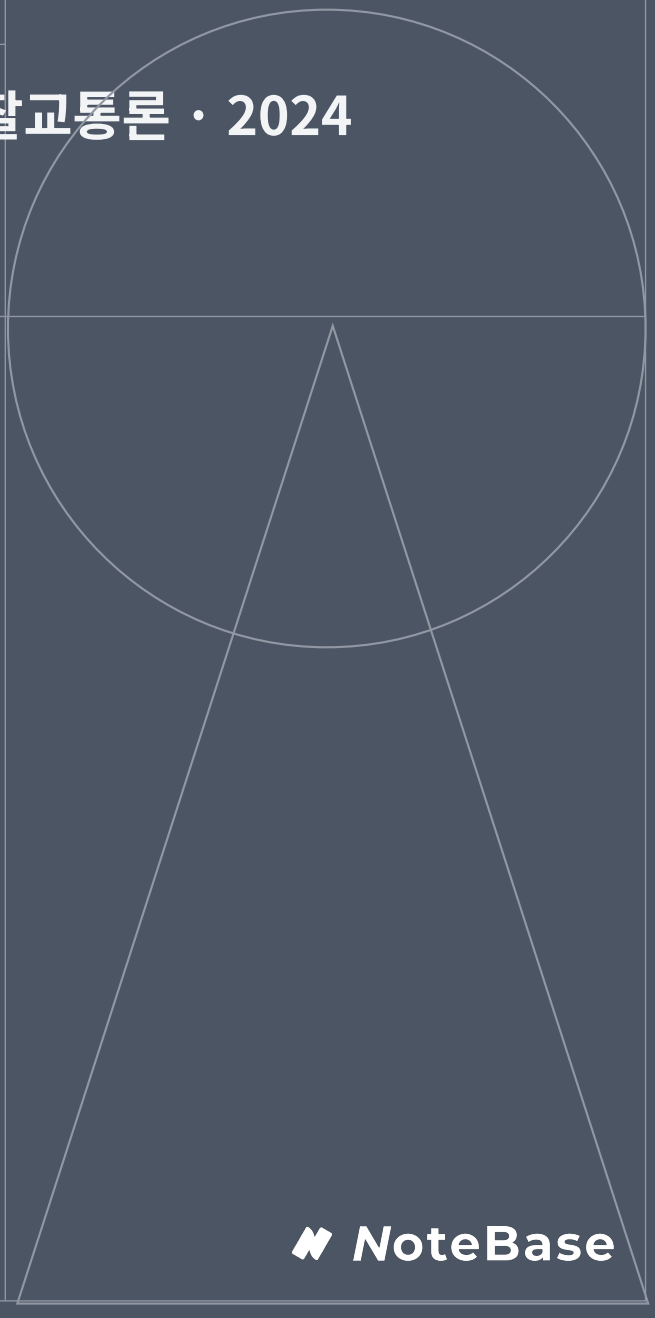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4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4

문 1.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연석과 같은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정답 4번

①

신호기는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며,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 · 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 · 정지 · 방향전환 ·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NoteBase

②

서행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가장자리 부분**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하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연석과 같은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NoteBase

문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의 통행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①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이다.

②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④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2019.4.17, 2020.12.10, 2020.12.31>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 · 안개 ·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 · 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20.12.31, 2021.12.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NoteBase

③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 · 안개 ·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 · 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20.12.31, 2021.12.31>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 · 폭설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④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 · 안개 ·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 · 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20.12.31, 2021.12.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NoteBase

문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노면표시의 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란색: 중앙선표시, 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의 테두리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표시

② 파란색: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③ 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④ 주황색: 노면색깔유도선표시

정답 4번

①

중앙선표시, 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의 테두리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1)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 · 주차금지표시, 정차금지지대표시, 보호구역 기점
· 종점 표시의 테두리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노란색

NoteBase

②

전용차로표시와 노면전차전용로표시는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2)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파란색

③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에는 **빨간색**을 사용한다. 연석형 표시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시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3)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보호구역(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빨간색 또는 흰색

https://drive.google.com/file/d/1kLOfYj9SOG45STU50QX32JqizQhCpdXq/view?usp=drivesdk

NoteBase

④

노면색깔유도선은 주황색이 아니라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으로 표시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NoteBase

문 4.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주차 및 정차 금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25
② 30
③ 35
④ 40

정답 3번

NoteBase

공통 해설

정차·주차 금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 버스 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네 수의 합은 5 + 10 + 10 + 10 = 35이다. 다만,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의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버스의 정차·주차는 ㉢의 금지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NoteBase

문 5.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규정된 시·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②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폐지에 관한 사항

③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폐지에 관한 사항

④ 표준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①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설치·폐지는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횡단보도에는 자전거횡단도도 포함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에서는 관할 시 · 도경찰청에, 시 · 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 · 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다만, 시 · 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 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에도 시 · 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 ·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통행의 금지·제한과 차로의 구획·폐지는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에서는 관할 시 · 도경찰청에, 시 · 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 · 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다만, 시 · 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 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에도 시 · 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 · 폐지에 관한 사항

NoteBase

③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폐지는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에서는 관할 시 · 도경찰청에, 시 · 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 · 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다만, 시 · 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 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에도 시 · 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 · 폐지에 관한 사항

④

표준지침의 제·개정은 시·도경찰청 등의 위원회가 아니라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경찰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를 거쳐 도입한다.
3. 표준지침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NoteBase

문 6.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상 교통안전시설 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등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별·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시설 관리자는 담당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시설에 대한 보존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시설이 훼손·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시설이 훼손·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보고 받은 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교체·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교통안전시설의 도로별·구간별 관리자를 지정하는 주체는 시장등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
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별 · 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관리자는 담당구역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 보존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자는 담당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에 대한 보존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시설이 훼손·망실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
③ 교통안전시설이 훼손 · 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교체 · 정비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교체·정비**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
③ 교통안전시설이 훼손 · 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교체 · 정비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7.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예외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등에게 해당 시설 주변도로의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6.5.2>

②

경찰청장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는 의무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등)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oteBase

③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를 진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 · 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단속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장소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할 의무**를 진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해제 및 관리)
④ 시 · 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0.12.22>

NoteBase

문 8. 「도로교통법」 제49조에 규정된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②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④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다만, 경찰용,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

정답 4번

①

물이 고인 곳에서는 **고인 물을 튀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②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한 후 문을 열거나 내려야 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NoteBase

③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④

가시광선 투과율 제한의 예외는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이다. **경찰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NoteBase

문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②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③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도난, 분실 제외)
④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정답 2번

①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려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적용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IcF_fRKd1gJHr3T22aqUoUbxp2Bap16G/view?usp=drivesdk

②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는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구속된 경우가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E6PxoZ_tGiY5VFi6OieyAj8bgiOkuofW/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j6aTC4u7lAdYIWSJZRcKjQBDb3Qy--s7/view?usp=drivesdk

③

다른 사람이 자신의 면허증으로 운전하도록 빌려주는 행위는 **부정한 사용 목적의 대여로서 면허취소 사유**이다. 도난·분실로 타인이 사용한 경우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https://drive.google.com/file/d/1kf9rZg3q5cqHCyY-joQA80d9DjDUTyxA/view?usp=drivesdk

④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적용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2t03aAAvCqYPKIxzGwqONbqMV6yQWwj7/view?usp=drivesdk

NoteBase

문 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②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③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수사

④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답 3번

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은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 단속

②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신고 사무는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NoteBase

③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수사는 **자치경찰사무에서 제외되는 국가경찰사무**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자치경찰사무와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는 제외한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범죄. 다만, 차의 운전자가 같은 항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는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8조의2, 제151조, 제151조의2제2호, 제152조제1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범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범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의 범죄

④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NoteBase

문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신호등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량신호등은 교통사고가 연간 3회 이상 발생한 장소로 교통 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② 보행신호등은 차도의 폭이 16미터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에 설치한다.

③ 보행신호등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에 설치한다.

④ 차량신호등은 학교 앞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대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에 설치한다.

정답 1번

①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차량신호등을 설치하는 기준은 **연간 5회 이상**이며, 신호등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jJ0PpTfQ6O9hhyv5dAXbbvDFsfIBmQF/view?usp=drivesdk

②

차도의 폭이 **16미터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가 변해도 보행자가 차도에 남는 경우가 많으면** 보행신호등을 설치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d2oh9yY7DJxtGOmjarGRi-ctydRaZeXV/view?usp=drivesdk

③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하루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초과하면** 보행신호등을 설치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d2oh9yY7DJxtGOmjarGRi-ctydRaZeXV/view?usp=drivesdk

④

학교 앞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대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이면** 차량신호등을 설치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jJ0PpTfQ6O9hhyv5dAXbbvDFsfIBmQF/view?usp=drivesdk

NoteBase

문 12.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사시행자는 공사시행 7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에 의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수정·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도경찰청장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

공사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공사시행 3일 전**에 공사 일시·구간·기간·시행방법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NoteBase

㉡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할 필요가 있으면 **공사시행자가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공사시행자에게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수정·보완을 지시**하고, 공사 중에는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② 경찰서장은 별표 1의「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에 의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교통통제계획 ·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수정 · 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 및 지도 · 감독을,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별시·광역시에서 도로공사로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면 관할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③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 · 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NoteBase

문 13.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고속도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를 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로의 점용허가를 통보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 ·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14>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NoteBase

②

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③

승차구매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 도로관리청은 그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시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학교: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④

통보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NoteBase

문 14. 「교통사고조사규칙」상 초동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교통사고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은 관할 또는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수신호 또는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등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상황판단, 출동경찰관 소요인원 판단 및 사고조사 보조 등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사고일시 및 장소, 피해정도 및 내용만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다른 경찰서 관내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한 후 3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여 그 경찰서에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교통사고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은 **관할에 관계없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조(초동조치)
① 교통사고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은 관할에 관계없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등 구호기관에도 통보하여 구급차 출동 등 사상자 구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수신호나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등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조(초동조치)
③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신호 또는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등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③

사고일시·장소와 피해정도·내용 외에 **신고자의 성명·연락처·사고 목격 여부**도 확인·기록하며, **신고자가 사고 당사자라면 사고차량 번호·차종**도 확인·기록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조(초동조치)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상황판단, 출동경찰관 소요인원 판단 및 사고조사 보조 등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사고 목격 여부 4. 신고자가 사고 당사자인 경우 사고차량 번호 및 차종

NoteBase

④

다른 경찰서 관내의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 필요한 초동조치 후 **신속히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여 그 경찰서에서 출동·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조(초동조치)
⑤ 다른 경찰서 관내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여 그 경찰서에서 출동 ·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5. 「교통사고조사규칙」상 대형사고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교통과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시·도경찰청장(교통과장 및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사후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③ 시·도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시·도지사 및 사고차량 소속회사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사고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형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습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경찰서장(교통과장)은 대형사고 발생 시 실황조사서가 아니라 **대형사고발생보고**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장(교통과장 및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4조(보고 및 통보)
① 경찰서장(교통과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사고발생보고"를 작성하여 시 · 도경찰청장(교통과장 및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형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사후수습에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5조(지휘본부 설치)
①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사후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1. 시 · 도경찰청 지휘본부 : 시 · 도경찰청 교통안전계(야간에는 상황실)에 설치 2. 경찰서 지휘본부 : 경찰서 교통과(야간에는 상황실)에 설치 3. 현장 지휘본부 : 대형사고 규모에 따라 필요시 사고현장에 설치

NoteBase

③

시·도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시·도지사와 사고차량 소속회사 등 관련기관·단체에 대형사고를 통보하여 사고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4조(보고 및 통보)
③ 시 · 도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시 · 도지사 및 사고차량 소속회사 등 관련기관 · 단체에 통보하여 사고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형사고 수습에 필요한 경우 수습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6조(수습대책위원회 설치)
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형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NoteBase

문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처벌특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③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④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하여 운전한 경우

정답 4번

①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NoteBase

②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③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NoteBase

④

도로 파손·공사·장애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으면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우측통행 의무의 예외이므로 처벌특례를 배제하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NoteBase

문 17. 「교통단속 처리지침」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단속”이라 함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경고·계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적발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② “교통외근경찰관”이라 함은 교통현장에서 교통정리·지도·단속 등 교통안전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③ “주취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 0.01%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범칙금납부통고서”라 함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찰서장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는 서식을 말한다.

정답 3번

①

교통단속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경고·계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적발하는 경찰활동**을 뜻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3조
1. “교통단속”이라 함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경고⊠계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적발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이하 “단속”이라 한다.

②

교통외근경찰관은 **교통현장에서 교통정리·지도·단속 등 교통안전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뜻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3조
3. “교통외근경찰관”이라 함은 교통현장에서 교통정리⊠지도⊠단속 등 교통안전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외근요원”이라 한다.

③

자동차등의 주취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NoteBase

④

범칙금납부통고서는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위반 이유를 밝혀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서식**이다.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 · 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20.10.20>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NoteBase

문 18. 「교통단속 처리지침」상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단속은 순찰근무·교통안전활동 중 또는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교통경찰관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피단속자가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한 경우 이를 직접 수납할 수 있다.

③ 교통과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지점으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적정성을 검토한다.

④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차의 통행 및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한 장소로 유도·정차하게 한 후 안전한 위치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정답 2번

①

교통단속은 **순찰근무·교통안전활동 중 또는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에서 실시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9조
제9조(단속 방법) ① 교통단속은 순찰근무☒교통안전활동 중 또는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교통경찰관은 **피단속자가 현장에서 납부하려 하여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직접 수납할 수 없다**. 선지는 현장수납 금지를 반대로 설명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10조
제10조(현장수납금지) 교통경찰관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피단속자가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여도 이를 직접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교통과장은 관할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지점으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적정성을 검토**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9조
② 교통과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지점으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적정성을 검토한다.

NoteBase

④

위반 차량을 단속할 때에는 **다른 차의 통행·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한 장소로 유도·정차시킨 후 안전한 위치에서 단속**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9조
③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차의 통행 및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한 장소로 유도⊠정차하게 한 후 안전한 위치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NoteBase

문 1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교육 과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운전교육
② 배려운전교육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④ 법규준수교육

정답 3번

①

음주운전교육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교육과정**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zp6B4opRVdYYpoBtZiYI6D2iAWHZt63y/view?usp=drivesdk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별개의 교육**이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교육과정은 음주운전교육·배려운전교육·법규준수교육(의무)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clnQzuDi5cB0Ae_AJ_4hPZwmzNh9s_aP/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blb1If7FTFw6HVHbwOZMMegQON6KcH_y/view?usp=drivesdk

NoteBase

문 20.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④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1번

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좌측이 아니라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가 없고 일시정지·양보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앞차가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방향지시기·등화로 신호하면, **뒤차는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NoteBase